의안번호	2126548
의 뢰 인	김교흥의원
회 답 일	2024. 4. 23.
추계번호	24D0191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7억 8,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6억 5,300만원(연평균 5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위원회·실무추진단 설치·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	1,785	211	215	219	223	2,653	531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1)]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2	안 제8조(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1) 제정안 제49조(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58조(법인세 등 조세의 감면), 제59조(부담금 등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부담금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에 포함하지 않음

3	안 제10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2조(실태조사)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4조(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 제19조(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국가, 인천광역시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중 공항·항만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국제물류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기관·단체 등이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 -정부는 국제물류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 공항·항만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장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0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정부는 첨단산업등의 생태계 조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적 동향·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연구소의 설치·지정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정부는 첨단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2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제28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관할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대한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인천광역시장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투자진흥지구의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국가는 인천광역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의 국가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장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29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제3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장은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등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장은 시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은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 등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38조(글로벌 교육환경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제43조(국제학교의 설립 등)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학교가 외국의 학교와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아교육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장은 물류·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등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46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50조(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인천광역시장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 등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인천광역시는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의 지원을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51조(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제56조(지역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특구 등의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관리청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은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기관·단체 등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이 특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60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설치)	○	-
2	안 제8조(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	○	-

3	안 제10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의 수립)	○	-
4	안 제12조(실태조사)	○	-
5	안 제14조(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제19조(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	국제물류특구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 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물품의 종류, 세금감면규모, 국제물류특구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6	안 제20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진흥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소의 설치·지정, 육성·지원시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를 추정 곤란
7	안 제2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제28조(해외우수창업기업 지원)	×	인천광역시장이 인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지역의 위치, 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인천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 해외 우수창업인력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8	안 제29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제3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할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위치·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원센터의 운영, 국제회의 유치·개최,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추정 곤란
9	안 제38조(글로벌 교육환경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제43조(국제학교의 설립 등)	×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유치원 운영경비, 외국학교법인 설립·운영비용 등에 대한 지원규모, 대학원대학 설립비용, 국제학교 설립·운영비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0	안 제46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50조(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외국인환자 정보제공·상담,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추정 곤란
11	안 제51조(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제56조(지역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	특구 등의 개발사업이 실시될 지역·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2	안 제60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7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안 제7조제5항)가 설치되며,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안 제7조제6항)을 설치한다고 가정함

○ 위원회의 위원은 총 25명이고, 이 중 15명이 위촉위원이라고 가정

○ 위원회 산하에 2개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며, 전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각각 7명, 8명이라고 가정

○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분기별로 1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을 지급하며,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실무추진단의 운영비용은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실무지원단의 운영비용을 준용하여 추계함

-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실무지원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4개의 실무지원단이 통합 운영 중이며, 1개 지원위원회에 대한 실무지원단 운영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평균비용을 준용함

❑ 안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 안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 안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유사 예산 사례를 준용함

○ 제정안에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정·보완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법률안이 시행되는 2025년에 실시한다고 가정

○ 실태조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매년 실시한다고 가정

○ 실무추진단 운영비용, 종합계획 수립비용 및 실태조사 실시 비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를 적용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각 연간 1,5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15명의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

❑ 국무총리 산하 실무추진단의 운영비는 2024년 예산에 반영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시·도별 평균비용을 준용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5,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억원으로 추계됨

○ 2024년 예산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4개의 실무지원단을 통합운영하는 비용으로 2억 2,600만원의 운영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특별자치시·도별 평균 실무지원단 운영비용은 5,650만원임

○ 실무추진단 운영비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따라서, 안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무총리 산하 실무추진단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3년 8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7	2.4	2.1	2.0	2.0	2.0

[표 2]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원회 위촉위원 수당 지급	15	15	15	15	15	75
전문위원회 위촉위원 수당 지급	15	15	15	15	15	75
실무추진단 운영	58	59	60	61	62	300
합 계	88	89	90	91	92	4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안 제8조)

❑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기존에 인천광역시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실무추진단 예산 금액을 준용함

○ 인천광역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기획단[3]을 운영 중이며, 2023년 운영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제정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7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억 4,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안 제8조)	27	28	29	30	31	1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안 제10조)

❑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유사 종합계획의 수립에 소요된

3)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 발굴 및 추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임

예산금액을 준용함

○ 인천광역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4]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5] 비용으로 2023년 15억원을 편성하였음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5년에만 비용이 발생

❑ 제정안에 따라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2025년 15억 7,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 (안 제10조)	1,578	0	0	0	0	1,5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2조)

❑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과거 인천광역시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편성한 예산 금액을 준용함

○ 인천광역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 실시를 위하여 2023년 8,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9,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실태조사의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2조)	92	94	96	98	100	4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인천광역시에 글로벌기업·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고 첨단 미래산업 등을 육성하여 글로벌도시로 만드는 사업

5) 뉴홍콩시티 대상지의 여건 조사 및 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핵심사업 선정, 로드맵 작성 등

마.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7억 8,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6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88	89	90	91	92	450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	27	28	29	30	31	145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	1,578	0	0	0	0	1,578
실태조사의 실시	92	94	96	98	100	480
합 계	1,785	211	215	219	223	2,6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